

수증자산명세서, 채무상환(예정)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

(앞 쪽)

1. 수증법인

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 성명		④ 법인등록번호	
⑤ 사업장(본점)소재지	(전화번호:)		
⑥ 업 종		⑦ 사업개시일자	
⑧ 사업연도	년 월 일	년부터 일까지	
⑨ 이월결손금		⑩ 기타 채무면제 · 자산수증익	

2.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

수 증 명 세			금융기관채무상환(예정)명세		
⑧ 수증일	⑨ 주주등의 성명	⑩ 금액	⑪ 금융기관명	⑫ 상환일	⑬ 상환금액

3.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

수 증 명 세				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(예정)명세				
품목	⑭ 수증일	⑮ 주주등 성명	⑯ 시가	⑰ 양도일	⑱ 양도금액	⑲ 금융 기관명	⑳ 상환일	㉑ 상환금액

4.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

익금불산입		분할익금산입(계획)					
㉒ 사업연도	㉓ 금액	1차 연도		2차 연도		3차 연도	
		㉔ 연도	㉕ 금액	㉖ 연도	㉗ 금액	㉘ 연도	㉙ 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[] 제37조제23항, [] 제116조의3제24항)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, 채무상환(예정)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⑦기타 채무면제·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㉓금액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7조제2항 또는 제116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.